

대전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19나161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19나16183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15 선고 2019가합1013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중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오, 박재현, 장시원, 이지윤, 신준섭

변론 종결2021. 7. 7.

판결 선고2021. 8. 25.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15. 선고 2019가합10130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유한회사 사이에 아산시 D 대 15,214.7m²에 관하여 2019. 1. 24. 체결된 권리의무승계계약은 1,219,927,99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9,927,9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그 주장을 제1심이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13,680,000,000원"을 "1,368,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금액는"을 "금액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의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를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4241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다209197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ㄱ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약 12억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권 일체를 이 사건 승계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꿈에 따라,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 한편 해당 매각대금이 실제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지도 아니하여 그 매각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C이 2019. 1. 24.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5억 원은 C의 대표이사 G, H과 이사 I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갑 제1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또한 C이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채무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이를 변제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에도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수인 지위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권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이로써 C은 변제자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승계계약의 체결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2021. 6. 9. 설계용역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이종의 권리행사를 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뿐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종의 권리행사를 시도할 경우 피고로서는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그 재산처분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였거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ㄱ

○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매수인 지위를"을 "매수인 지위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권을"로, 제7면 아래에서 제6행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가"를 "매수인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권이"로, 제7면 아래에서 제5행, 제8면 아래에서 제4행의 각 "매수인의 지위를"을 "매수인 지위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권을"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5, 6행의 "1,231,706,153원(원금 합계 1,144,800,000원 + 지연손해금 85,906,153원)"을 "1,348,709,240원(원금 합계 1,144,800,000원 + 지연손해금 203,909,240원)"으로 고치고, 제9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ㄱ

③	184,940,000	2018. 2. 28.	3 + 130/365	연 6% (상법)	37,241,342원
④	434,940,000	2018. 6. 20.	3 + 18/365	79,576,145원	
⑤	434,940,000	2018. 9. 15.	2 + 296/365	73,335,907원	
⑥	89,980,000	2018. 12. 20.	2 + 200/365	13,755,846원	
합계 1,144,800,000	203,909,240원				

ㄱ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준명

판사임현태

판사백승준